##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

## (제9조제2항 관련)

사 업 별	융 자 기 간 (상환조건)	융 자 비 율	융 자 한 도		
1. 구조조정 지원사업	자동화사업, 정보화사업, 기술개발사업화사업,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, 창업지원사업, 사업전환사업, 설비이전사업,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, 서울형산업(패션·디자인·애니메이션·소프트웨어·문화관광상품산업·벤처기업 및 국제회의기획업)				
시설자금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100% 이내	8억원 이내 (단,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이내)		
경영안정자금	3년 이내 (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)	1회전 소요자금의 100% 이내(시설자금 지원범위 내) 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 1/4 이내	3억원 이내		
2. 입지지원사업					
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 75% 이내	200억원 이내		
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입주자금의 75% 이내	8억원 이내		
공장용지 임대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용지매입비의 75% 이내	20억원 이내		
산업단지 입주지원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% 이내	8억원 이내		
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설치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축경비의 75% 이내	200억원 이내		
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)	입주자금의 75% 이내	8억원 이내		

사 업 별		융 자 기 간	융 자 비 율	융 자 한 도	
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	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비의 75% 이내	50억원 이내	
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	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축비의 75% 이내	100억원 이내	
산업개발진흥 지구·특정개발진흥 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	시설건설사 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설비의 75% 이내	100억원 이내	
	시설 증·개축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증·개축 사업비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	
соно сс	입주지원사 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75% 이내	8억원 이내	
자산화사업		15년 이내 (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장 매입비의 75% 이내	50억원 이내	
3. 유통업구조개선 사업		·공동창고 설치 및 사업비의 범위 : 기반, 건축공사비(부대시설비 포함), 건물임 차비 및 건물매입비(토지는 제외)			
시장시설개선		15년 이내 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	
공동창고설치	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75% 이내	15억원 이내	
점포시설개선	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100% 이내	1억원 이내	
4. 시장재개발 사업		<ul> <li>○ 시장재개발사업비의 범위: 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, 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</li> <li>─ 부속시설: 주차장, 소비자 편익시설, 통로, 화장실 등</li> <li>─ 설비비: 전기, 기계설비, 상하수도시설, 냉난방시설 등 설치비</li> <li>─ 필요경비: 건물철거비, 이주비 등(단, 총사업비의 30% 이내에 한함)</li> <li>○ 임시시장설치사업비의 범위: 임시시장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</li> </ul>			
시장재개발 사업		15년 이내 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비의 75% 이내	100억원 이내 (단, 지역경제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1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 음)	
임시시장설치 사업		15년 이내 (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비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	

	사 업 별	융 자 기 간	융 자 비 율	융 자 한 도			
5.	외국인투자기업 지원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외국인 투자금액 범위이내의 임 차료, 건축비 또는 건물매입비 및 이에 부대하는 기계 등 설비 비	20억원 이내			
6.	6. 중소기업연구소 설립						
	부설연구소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 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% 이내	5억원 이내			
	공동연구소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물매입 또는 건축비와 이에 부 대되는 기계설비비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			
7.	건설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의 75% 이내	5억원 이내			
8. 호텔사업	ا د الع	8년 이내	호텔건설비, 증·개축비의 75% 이내	10억원 이내			
	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호텔 개ㆍ보수비의의 75% 이내	5억원 이내				
9. 숙박사업	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숙박시설건설비, 증· 개축비의 75% 이내	5억원 이내			
	숙박사업		숙박시설 개·보수비의 75% 이 내	3억원 이내			
10	). 중소기업 공동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사업비의 75% 이내	100억원 이내 (단,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100억원 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 음)			
11	. 운송업구조개선 사업	8년 이내 (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)	소요자금의 75% 이내	8억원 이내			